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영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301

발의연월일: 2025. 3. 24.

발 의 자:신영대·허성무·홍기원

전재수 · 이해민 · 김정호

유준병 • 한민수 • 강준혁

김기표 · 김용만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, 기금운용 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 기획재정부장 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음.

현재 단서 조항에 따라 다수의 기금이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나 기금운용회심의회의 미설치 사유와 합당성에 대한 의문 이 제기되고 있음. 또한, 기금운용심의회 미설치에 따라 기금의 관리 ·운용에 대한 투명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여 기금의 관리·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 함(안 제74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4조제1항 단서 중 "협의하여"를 "협의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금운용심의회 설치에 관한 적용례) 제74조제1항 단서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운용심의 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기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제74조(기금운용심의회) ① 기금 | 제74조(기금운용심의회) ① |
| 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・운용 | |
|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 | |
| 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 | |
| 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 | |
| 를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심 | |
| 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| |
|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 | |
| 획재정부장관과 <u>협의하여</u> 설치 | <u>협</u> 의한 후 국회 |
| 하지 아니할 수 있다. |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 |
| | <u>o}</u> |
| ② ~ ⑤ (생 략) |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|